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아래 표참조)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만원)

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2 거래 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표시됩니다.

구분	내용													
가입자격	<input type="checkbox"/>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혹은 군복무자													
	<input type="checkbox"/> 소득요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인정· 직전 과세기간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연환산함· 소득요건 증빙서류													
	<table><thead><tr><th>구분</th><th colspan="2">소득서류</th></tr></thead><tbody><tr><td>기준</td><td colspan="2">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td></tr><tr><td rowspan="3">예외인정</td><td>근로소득자</td><td>(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회사 직인 날인)</td></tr><tr><td>사업소득자</td><td>-</td></tr><tr><td>기타소득자</td><td>·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td></tr></tbody></table>	구분	소득서류		기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예외인정	근로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회사 직인 날인)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소득서류												
기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예외인정	근로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회사 직인 날인)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군복무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지무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하여 중인 군인으로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복무자 증빙서류 : 군복무 확인서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p>※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p>														
가입제한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함													



저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납입 가능)

적용이율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납입원금과 무주택기간에 대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연 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우대이율 적용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 전환신규한 계좌의 경우, 전환신규 후 추가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적용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에서 제외)
- 무주택기간: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가입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이율 적용
 - 가입일이 속한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이 없으므로 우대이율 미적용
- 주택 소유 여부 및 취득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계좌 일부인출, 해지 시 다음 서류를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준: ① ‘재산세(주택)’ 항목만 발급, ② 전국단위로 발급, ③ 주민센터 혹은 구청 발급분, ④ 가입연도부터 ~ 해지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 ‘재산세(주택)’ 항목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
 -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부과시기로 주택 소유시점을 판단
 - 해지 이전 소유 주택을 매도하였거나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상인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소명 가능함
-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이자율은 그대로 적용함

(2024.02.21 현재 세금공제 전)

가입기간	기본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우대이율 적용 시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1.7%p (단, 1개월초과~2년미만은 청약당첨 해지 시만 적용)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	연 2.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우대이율 연 1.5%p를 적용하며, 변경 후 시점부터 연 1.7%p를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계좌 해지 전까지 세대주(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대해 우대금리 1.5%p를 적용
-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 이자율만 적용을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지 가능함

<p>일부인출 이율</p>	<p><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p>	
<p>만기 후 이율</p>	<p><input type="checkbox"/>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p>	
<p>이자 지급방식</p>	<p><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혹은 일부인출 요청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p>	
<p>적용세율</p>	<p><input type="checkbox"/>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 ※ 세율은 2024.02.2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비과세</p>	<p><input type="checkbox"/> 대상자: 가입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¹⁾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에 속한 세대를 포함.이하 동일)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 아님 <input type="checkbox"/>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 (예외사항: 사망, 해외이주, 85㎡ 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 <input type="checkbox"/> 신청서류 · 무주택확인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 각서 및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작성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가입 당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제출 가능.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무주택여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증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 제한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소득공제</p>	<p><input type="checkbox"/>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¹⁾의 세대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²⁾ 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 (예) 2024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5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급등록 불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대한도 120만원)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기간 1.1~12.31 내 납입한 입금일 기준임) ※ 상기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기존 공제한도(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적용)</p>	





기 타	<input type="checkbox"/>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약의 해지	<input type="checkbox"/>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 없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법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
일부인출	가능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1회에 한해서 지정 입금 회차별로 일부인출 가능 <input type="checkbox"/> 영업점 방문을 통한 일부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본인명의로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 가능 <input type="checkbox"/>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은 불가

3 유의 사항

■ 입금 관련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이상 납입해야 순위발생 하므로, 입금 시 회차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또는 선납하실 경우 청약 순위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보다 늦게 납입하는 경우(지연),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납입하는 경우(선납)는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된 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발생이 인정됩니다.)
 - ※ 단, 1순위 산정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는 최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 후 2년(국민주택 인 경우 월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순위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가입기간 등 별도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가입시 인정기준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하는 경우 24회 인정)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 인정되며, 60회 미만이면 해당 횟수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로서 납입금액 중 회차별 금액(최고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하여 횟수 산정됩니다.

②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점제 통장기간 산정 :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인정)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인정되며, 5년 미만이면 해당기간 인정됩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청약 시, 해당첨 제한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 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어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환신규한 계좌의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인정된 회차와 금액은 인정되며, 해지 시점에 선납 및 연체로 미인정된 회차,금액은 제외
 - 전환신규계좌는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을 제외한 이후 납입분부터 회차, 금액 인정
 - ②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전액을 계속해서 인정
 - ③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유형별 상속시 납입인정횟수 및 추가납입금 인정횟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 납입회수	상속 시 납입인정횟수	상속인의 추가납입금 인정횟수 한도
성년자	미성년자	60회 이상	총 납입인정 횟수	추가 납입금 인정 불가
		60회 미만	총 납입인정 횟수	총 납입 인정횟수 60회
미성년자	성년자	60회 이상	인정횟수 중 60회	전부 인정
		60회 미만	총 납입인정 횟수	
미성년자	미성년자	60회 이상	인정횟수 중 60회	추가 납입금 인정 불가
		60회 미만	총 납입인정 횟수	총 납입 인정횟수 60회

- ①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납입횟수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최대 24횟수)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의 추가납입금 인정횟수는 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상속인의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인정 횟수는 피상속인이 미성년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한 횟수와 합하여 2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향후 성인이 되는 경우의 추가 납입금은 전부 인정됨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유형별 상속시 가입인정기간 및 추가 가입인정기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피상속인 가입기간	상속 시 가입인정기간	상속인의 추가 가입인정기간 한도
성년자	미성년자	5년 이상	총 가입기간	추가 가입기간 인정 불가
		5년 미만	총 가입기간	총 가입기간 5년
미성년자	성년자	5년 이상	총 가입기간 중 5년	전부 인정
		5년 미만	총 가입기간	
미성년자	미성년자	5년 이상	총 가입기간 중 5년	추가 가입기간 인정 불가
		5년 미만	총 가입기간	총 가입기간 5년

- ①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가입인정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 (최대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의 추가 가입인정기간은 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상속인의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인정기간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기간과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향후 성인이 되는 경우의 추가 납입금은 전부 인정됨

-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① 자기 또는 타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계좌로 송금한 경우
 - ② 송금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금 반환청구(당행 및 타행)를 신청하는 경우
- 은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당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는 경우로써 통장 잔액에서 반환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청약예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②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최고금리	연 4.5%	기본이율(연 2.8%) + 우대이율(연 1.7%p) - 가입기간 2년 이상으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 가입기간 최대 10년 내에서 무주택기간까지 - 상세 우대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 '24.02.21 세금납부 이전 기준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 만19세~만34세 이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군 복무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능)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최저가입금액	2만원	최고가입금액	매월 100만원 이하
일부인출	○	▶ 청약당첨 후 1회 가능 -중도인출 시 약정이자율 적용	
예금담보대출	○	▶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예금자보호	X	▶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유의사항

※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상품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우리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 별 약정이율을 적용
이자계산방법	▶ 입금건별로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해지 시 지급 ※ 가입기간 1년, 3회차 납부 후 해지 예시
예금만기	▶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가능